

[일련번호 : 1]

# 양 천 구

## 주 의 요 구

**제 목** 주민자치회 신규위원 인적사항 미공개 및 강사 해촉보고 지연

**관 련 기 관** 서울특별시 양천구 ◻◻동

**내 용**

### 1. 업무개요

◻◻동은 「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·운영 조례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자치회관 및 주민자치회 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.

### 2.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

「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0조 제3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위촉된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위촉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고,

「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제4조에 따르면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와 동 주민센터의 홈페이지,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주민에게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

또한 「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제24조 제3항에 따르면 동장은 강사를 위·해촉할 경우에는 위·해촉한 날로부터 5일 이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

### 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

◆◆동은 2024. 2월 제3기 주민자치회 신규위원의 인적사항을 동주민센터 홈페이지, 게시판 등에 공개하지 않았으며, 2023년 자치회관 프로그램강사 \*\*\* 외 2명, 2024년 강사 \*\*\*를 해촉하였으나 이를 구청장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.

[표] 주민자치회 신규위원 인적사항 공고 및 프로그램 강사 해촉보고 누락 현황

연번	연도별	지적사항
1	2023년	- 강사 해촉사항 미보고 (**(23.1.) *(23.7.) *(23.12.))
2	2024년	- 제3기 주민자치회 신규위원 인적사항 미공고 (24.2.) - 강사 해촉사항 미보고 (***(24.4.))

### 4.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

◆◆동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.

### 5. 조치할 사항

#### ◆◆동장은

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기 바라며, 자치회관 및 주민자치회 운영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·감독하시기 바랍니다. (주의)